

#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8월 30일

##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1. 제안이유

가. 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시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 인식을 개선하여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및 군수·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- 다.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안 제10조)
- 라.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, 안 제12조)
- 마.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위탁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| 제 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사항 | 찬반여부 및 사유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
| ○ 주 소 :<br>○ 성 명 :<br>○ 연락처 : |      |           |     |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### 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

##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시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이념)**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통일정책 및 대북관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민들의 건전한 통일안보의식 확립
2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공직자, 시민, 사회단체 통일교육 등을 통해 시의 지역적 특수성 이해 및 통일의지 확립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통일교육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시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통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시 공직자, 시민,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1.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2. 시민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
3.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4조(군수·구청장의 책무)** 군수·구청장은 시의 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**제5조(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** 시장은 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(“이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**제6조(위원회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되,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국제협력관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회의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 3명과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일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2. 통일교육센터 활동에 관한 사항
3.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통일교육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일교육계획(이하 “통일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
3.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
4.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
5.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
6.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
7.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

8. 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9조(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)** 시장은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
3.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의 설립·운영
4.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5.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
6.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7.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)**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, 종교단체, 여성단체,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교육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.

**제11조(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)**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(이하 “통일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
2. 통일대비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
3. 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
4.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
5.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6.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 및 보급
7. 사회단체, 군·구,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
8. 통일·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**제12조(통일교육의 위탁 등)** 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 및 군·구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재정지원 등)** 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, 통일교육기관,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0조에 따라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계법령         | <p>○ 통일교육 지원법</p> <p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p> |
| 관련법규<br>정비대상 | “해 당 없 음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련자료         | “해 당 없 음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관련법령 발췌사항

## □ 통일교육 지원법

[시행 2010. 4.20] [법률 제9800호, 2009.10.19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통일교육”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2. “지역통일교육센터”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,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3조(통일교육의 기본원칙)**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.

② 통일교육은 개인적·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3조의2(통일교육 기본사항)**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4조(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일교육의 기본원칙·추진목표와 방향
2.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·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
3.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지원에 관한 사항
4. 통일교육실태의 조사·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## 제5조 삭제 <2008.12.31>

**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<개정 2009.10.19>)**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, 통일문제연구의 진흥,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지원,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·보급,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0.19>

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(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0.19>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9.10.19>

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6조의2(공공시설의 이용)**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6조의3 (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·운영)**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 또는 시설(이하 “기관 등”이라 한다)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
2.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

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
3.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

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7조(통일교육의 반영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(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)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8조(학교의 통일교육 진흥)** ① 정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초·중등학교”라 한다)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(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)이 초·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0.19>

③ 정부는 대학 등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, 강좌의 개설, 연구소의 설치·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9조(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)**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, 남북교류·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,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 12.31]

**제9조의2(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)**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[본조신설 2009.10.19]

**제10조(통일교육협의회)**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·조정,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**제10조의2(통일교육위원)**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.

1.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
2.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
3.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통일교육의 실시
2.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
3.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,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9.10.19]

**제11조(고발)**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**부칙 <법률 제9800호, 2009.10.19>**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